

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공고

『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협업부처 고유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현안해결 분야 스마트화 역량 집중

< 2025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

연번	협업부처	분야	운영기관	지원대상	지원과제수	신청접수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전자·기계부품·금형업종	15개 내외	'25.2.14 ~ 3.14
2	보건복지부	의약품 의료기기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업종	15개 내외	'25.2.14 ~ 3.14
3	식약처	식품안전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HACCP 인증획득 식품 제조기업	10개 내외	'25.2.14 ~ 3.14
4		식품GMP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5개 내외	'25.2.14 ~ 3.14
5		K-뷰티		화장품 제조기업	15개 내외	'25.2.14 ~ 3.14
6	과기정통부	산업보안 (5G)	중소기업기술 혁신협회	제조기업	15개 내외	'25.2.14 ~ 3.14
7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대한상공회의소	방위산업 제조기업	15개 내외	'25.2.14 ~ 3.11
8	해양수산부	수산물인증	한국수산회	수산식품 분야 제조기업	15개 내외	'25.2.14 ~ 4.14
9	농식품부	K-푸드	한국농어촌공사	농산업 수출 제조기업	15개 내외	'25.2.14 ~ 3.14
10	산자부	K-조선	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 제조기업	9개 내외	'25.2.14 ~ 3.21

각 분야별 세부공고는 운영기관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므로 운영기관별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 지원 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150개 내외
- (지원 조건)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50% 이내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고도화(동일수준)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 “고도화(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각 부처별 기업 지원서비스를 통한 도입기업 지원(붙임2 참고)

2. 신청자격 및 기간·방법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시작일) '25. 2. 14.(금)
 - * 각 부처협업형 사업 운영기관별 접수 마감일이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별 사업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사업 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기업 제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1~'23)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3)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각 운영기관별 사업공고에 명시된 추가 서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 각 분야별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 | |
|--|---------------------|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불입1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추진 및 평가 절차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절차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 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4. 유의사항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되, 수준 향상이 없는 경우 '동일 수준' 유형으로 신청
 -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 '동일수준' 예외 사항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 가능
 - * (예시, 초과달성) ①'기초'목표로 수행 후 '중간1' 달성, ②'중간1'목표로 수행 후 '중간2' 달성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①회계 정산 수수료, ②교육비 및 ③기술임치비용을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 ① 회계 정산 수수료 :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비고
50백만원 이하	455	부가세 제외
200백만원 이하	637	
400백만원 이하	910	
400백만원 초과	1,182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② 교육비 :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 비용 (1백만원) 필수 편성
- ③ 기술임치비 :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기술임치제도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escrow@win-win.or.kr)

- (현물편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현금·현물 모두가능)와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 중 20%* 내에서 현물로 편성 가능
 - * 동일수준 최대 1천만원, 고도화 4천만원 이내에서 편성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참고] 확인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공급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4명]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https://ssup.kosmes.or.kr)
기술교육 (오프라인)	- 대상 : 도입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2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사항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 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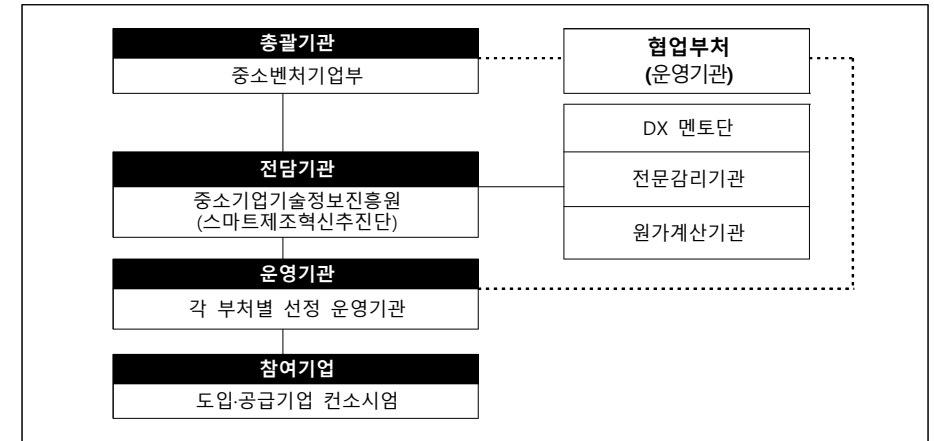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 추진체계



□ 담당 기관

구분	주체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운영기관	각 부처별 선정 운영기관	- 과제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 관리 등
참여기업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또는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6. 문의기관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공고관련 문의	044-204-7264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4
운영기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안전)	과제 신청,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관리	02-6388-6184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의약품, 의료기기)		02-6247-0914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	과제 신청,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관리	043-928-015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GMP)		043-928-0142
대한화장품협회 (K-뷰티)		02-785-7985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산업보안(5G))		031-628-9683, 9669
대한상공회의소 (방위산업)		02-6050-3855
한국수산물 (수산물인증)		02-898-0565
한국농어촌공사 (K-푸드)		061-338-5744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K-조선)		051-400-5131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관련 웹사이트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smart-factory.kr>

붙임 1 동시수행 제한사업 목록

☐ 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기존사업 수행중인 경우)

사업명(지원유형)	2021	2022	2023	2024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기초, 고도화1, 고도화2)				
-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 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				
-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일반형)				
- 공급망연계형 스마트공장				
-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 디지털협업공장				
-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 자율형공장				
- 제조혁신 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 단, 집중A/S 기간이거나 사업완료된 경우 신청 가능

☐ 동시 선정·신청 제한사업 목록('25년 신규 신청인 경우)

사업명	내용
①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지역특화 프로젝트 포함)	①~⑥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② 자율형공장	
③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⑤ 디지털 협업공장	
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⑦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스마트공장 사업 완료 후 신청
⑧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①~⑤ 사업 중 하나와 ⑧,⑨ 사업 동시수행가능 ※ ①~⑤사업에서 FEMS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에만 ⑧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동시수행가능
⑨ 제조혁신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붙임 2

부처협업별 기업지원 서비스

□ 기업지원서비스 목록

연번	협업부처	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전자·기계부품·금형업종 제조기업	안전보건 교육지원 안전보건 기술지원 안전보건 재정지원
2	보건복지부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기업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3	식약처	식품안전	HACCP 인증획득 식품 제조기업	스마트 HACCP 등록 기술지원 스마트 HACCP 범용솔루션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가이드라인
4		식품GMP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건강기능식품 스마트 GMP
5		K-뷰티	화장품 제조기업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
6	과기정통부	산업보안(5G)	제조기업	이음5G 운영자교육 이음5G 기술 컨설팅
7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방위산업 제조기업	국방품질경영체계 인증 기업 컨설팅 위변조 방지 및 보건 강화지원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중소기업 대상 SW 분석도구 지원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유망수출품발굴 지원
8	해양수산부	수산물인증	수산물식품 분야 제조기업	국제인증 취득 지원 수산물 수출통합 브랜드 취득 수산물 이력제 지원
9	농식품부	K-푸드	농산업 수출 제조기업	농기자재수축기업 육성지원 농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10	산자부	K-조선	조선해양기자재 제조기업	해군 함정 유지보수 기술지원 인력양성 HSE 컨설팅 품질·인증지원 공급망 형성지원

참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